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,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1조의 2)
- 공유재산법령상 민간위원 연임 제한규정 없어 관련 문구 삭제(안 제4조제3항)
  - ‘한 차례에 한정하여’ 삭제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(안 제30조제1항, 제3항, 제66조)
  - 감정평가업자 ⇒ 감정평가법인등

- 법령 개정에 맞춰 사용·대부료 감면 대상 수정·추가(안 제32조)
  - 지자체 귀책사유로 대부재산 이용 제한 시 전액 감면 추가
  - 청년실업 극복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, 고용위기·산업위기지역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50/100 감면 추가
- 법령 개정에 맞춰 사용·대부료 급등 시 감액 확대(안 제34조)
  - (현행) 사용·대부료가 전년 대비 5/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
  - (개정) 사용·대부료가 전년 대비 5/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
-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年 최대 6회까지 확대(안 제35조제2항)
- 기타 상위 법령에 맞춰 조항 수정 및 자구 정비 등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2021.10.21. 일부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,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1) (제32조제3항) 사용료(대부료) 감면 사항 추가
    - 도의 귀책사유로 이용에 제한 받는 경우 : 전액 감면
    - 시행령에서 정한 아래의 경우 : 50% 감면
      - 상시 10인 이상인 공장·연구시설·관광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

-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-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하는 경우
-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
- 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고용재난지역,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

2) (제34조) 사용료(대부료) 급등 시 감액범위 확대(70%→100%)

- 개정내용 : 사용료(대부료)가 전년 대비 5%이상 증가한 경우, 5%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

3) (제35조제2항) 사용료(대부료) 분납횟수 확대 (4회→6회)

- 개정내용 : 100만원 초과 시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 분할납부

현 행	개 정
100만원 초과 : 6개월이내 3회 분납	100만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납
200만원 초과 : 9개월이내 4회 분납	
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사용료(대부료) 관련 감면사항 추가, 감액범위 확대, 분납횟수 확대 등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